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글. 법제처 법제지원단 조용호 법제관



1 | 입안배경

국가경제의 지속적·균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 경제발전과 대책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규제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의원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전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 주요내용

가. 규제프리존 지정절차

- ① 규제프리존은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함(안 제2조 및 제6조).
- ②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제7조).

최근 입법동향

나. 기업실증특례제도

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다음의 “기업실증특례요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 다만, 안전성 등 일정 요건은 갖추어야 함(안 제13조).

〈기업실증특례 요청 기준〉

- (ㄱ)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ㄷ)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특별위원회는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

다. 규제프리존에서의 신기술적용 사업의 지원

- ① 규제프리존에서 신기술이 적용과 관련하여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②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라. 규제프리존에서의 사업활동 특례

- 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등이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함(안 제12조).
- ②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안 제32조).
- ④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할 수 있고,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35조 및 제37조).
- ⑤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0조).
- ⑥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안 제41조).
- ⑦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3조).
- ⑧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공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5조).
- 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음(안 제52조제1항).
- ⑩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역내사업자는 농업보호구역에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54조 및 제55조제1항).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자기술연구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안 제57조제1항).

최근 입법동향

- ⑫ 자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연간 120일 내에서 숙박영업을 할 수 있음(안 제58조제1항).
- ⑬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봄(안 제63조제1항).
- ⑭ 법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개설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직능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65조제7항).
- ⑮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안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 ⑯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안 제79조).
- ⑰ 규제프리존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입주수요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마. 벌칙 및 과태료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②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③ 연간 12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8조 및 제89조).

3 | 입법전망

지역개발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40여개 정도 있다. 접경지역, 도서벽지지역, 농촌지역, 주한미군공여 주변지역, 폐광지역 등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서해안이나 동해안 개발 등 특정지형과 관련된 개발법이 있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법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안과 같은 전국 단위의 개발법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손꼽힌다. 이들 기존의 법률의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기보다는 주로 국가의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로서 한계를 가진다.

발의법률안은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발의법률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이나 기업실증특례가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산업육성전략은 시·도 차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개발전략을 세우면 국가는 그 전략이 기존의 규제들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다른 규제의 적용이 가능한 구조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금까지의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정책수립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지역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였다. 국가전략특구에는 혁신적인 규제개혁 폐기지가 제공되는데 특히 의료 및 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